

의안번호	2204191
의 퇴 인	정준호의원
회 답 일	2024.10.25.
추계번호	24D363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8조의3 (비상용 발전설 비의 설치) 신설	(제1항)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비상용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(제2항) 제1항에 따른 시설별 비상용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 및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8조의3 (비상용 발전설 비의 설치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비상용 발전설비의 설치(안 제38조의3 신설)

- 개정안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비상용 발전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우 비상용 발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비상용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해당 시설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의 수, 비상용 발전설비 설치 여부, 설치 수량 및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비상용 발전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「전기설비기술기준」(산업부고시 제2023-197호), 「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2)」(소방고시 제2022-32호) 등 개별규정에서 비상용 발전설비 설치 의무대상¹⁾, 설치 장소·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
 - － 다만,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비상용 발전설치 의무대상이 현행 관련 규정의 의무대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1) 예를 들면, 「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2)」 제8조제2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층수가 7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,000㎡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,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니지만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㎡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